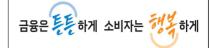
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4.11.1.(금) 조간	배포	2024.10.31.(목)		1.(목)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권재순	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훈	(02-3145-7260)

##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.

-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### < 주요 내용 >

- ① **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**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(CEO) 등을 **피보험자**로 하여 **가입**하는 보장성 보험임에도,
  -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'높은 환급률', '절세효과'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였고, 변칙적인 영업방식(속칭 '컴슈랑스\*')도 성행하였습니다.
  - \*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(**Com**pany와 In**surance**의 합성어)
- ② '23.10월~'24.3월중 **금융감독원**은 **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**한 **4개 GA**에 대한 **현장 검사**를 **실시**하였습니다.
  -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(1인당 약 4천만원)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  - 특히,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·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, 세무,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 (총 6억원 상당)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- ③ 아울러, 최근에는 **절세**와 **무관**한 **개인** 또는 **개인사업자**를 대상으로 **절세효과**를 내세우며 **경영인정기보험**을 **판매**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,
  -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④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,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며,
  - 「보험개혁회의」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, 개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·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

## I 추진 배경

- □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
  -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·검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

### <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 >

- · (4大 위법행위 공유·전파) GA의 4大 위법행위 사례 및 향후 검사·제재 운영 방향을 시리즈 형태로 공유·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소비자 주의 환기 도모
  - \* <sup>①</sup>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, <sup>②</sup>부당 승환계약, <sup>③</sup>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, <sup>④</sup>특별이익 제공
- · (제도개선 지속 추진) 「보험개혁회의」 등을 통해 GA의 판매책임 강화 및 보험 회사의 GA 위탁위험(Outsourcing Risk)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추진
- · (연계·동시검사 정례화) 보험회사의 자회사 GA에 대해서는 모회사 정기검사와 연계한 검사(연계검사), 초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(동시검사) 정례화
- □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를 공유 중이며,
  - 금번에는 경영인정기보험<sup>\*</sup> 관련 검사 시 적발된 수수료 부당 지급, 특별이익 제공 등 주요 지적사례 및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.
    - \*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, 법인 대표이사 (CEO)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

## Ⅱ 최근 검사 실시 현황 및 결과

## 1 검사 실시 현황

### 가. 개 요

- □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(CEO)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.
  -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'높은 환급률',
    '절세효과'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였고,
  - CEO의 특수관계인(자녀 등)을 설계사로 위촉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(속칭 '컴슈랑스\*')도 성행하였습니다.
    - \*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,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(**Com**pany와 In**surance**의 합성어)
- □ 언론 등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법·불건전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,
  - '23.10월~'24.3월중 **금융감독원**은 **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**에 대한 **현장검사**를 **실시**하였습니다.

## 나. 중점 검사사항

- □ (수수료 부당지급) GA·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\*를 점검하였습니다.
  - \*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25조 제1항 제2호(舊「보험업법」제99조 제2항) 위반 여부
- □ (특별이익 제공) GA·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<sup>\*</sup>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<sup>\*\*</sup>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.
  - \* 일정 금액[min(연간 납입보험료×10%, 3만원(건강증진형 상품의 경우 20만원)]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, 보험료의 대납,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
  - \*\*「보험업법」제98조 위반 여부

## 2 주요 검사 결과

### 가. 수수료 부당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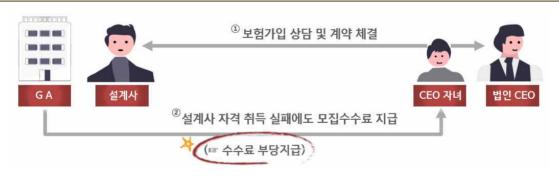
- □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(1개사 평균 45명)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 -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(위반금액)는 총 72억원 수준 이며, 1인당 약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 최근('23.10월~'24.3월)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수수료 부당지급 현황 >

#### □ 위반사례 예시

· OO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"자녀를 OO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"며 보험계약을 유도하였다.

그러나 CEO의 자녀는 여러번의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하였고, OO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,500만원을 지급하였다.



### 2 수수료 부당지급 현황(잠정)

(단위: 건, 명, 억원)

회 사	위반계약	지급	위반금액	예상 조치 수준		
외자	건수	무자격자수	커민급역	기관	임직원	
A사	323	29	36.4			
B 사	166	112	28.3	과태료, 업무정지,	대표이사 문책경고 등	
C 사	45	25	4.3	리구경시, 기관경고·주의		
D사	16	13	3.1			
합 계	550	179	72.1		_	
(평 균)	(138)	(45)	(18.0)		-	

\*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

## 나. 특별이익 제공

- □ 한편,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  -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·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,
  - **중소기업의 노무, 세무, 특허** 등의 **용역비용**을 **대신 지급**(총 6억원 상당)하였습니다.

### < 최근('23.10월~'24.3월)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특별이익 제공 현황 >

### □ 위반사례 예시

- ·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무, 세무, 특허 관련 비용<sup>\*</sup>을 대신 지급하였다.
  - \* (예)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관련 노무·세무비용 50만원 이익소각(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) 관련 세무비용 300만원 특허 출원 관련 비용 450만원



### [2] 특별이익 제공 현황(잠정)

(단위: 건, 억원)

히사	위반계약 건수	위반금액	예상 조치 수준		
외사		TICET	기관	임직원	
A 사	59	6.0	등록취소 또는	대표이사 해임권고	
A ^r			업무정지	또는 직무정지	

\*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

## Ⅲ 최근 이슈사항

- □ (개인 대상 불완전판매 우려)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(손금)으로 인정 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  -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<sup>\*</sup>하거나,
    - \* [민원사례] 개인사업자 A씨는 보험료의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, 이후 법인이 아닌 경우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
  -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, 상속 등에 활용\*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
   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.
    - \* 절세, 목돈 마련 등을 내세우나 개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고,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, 보장성 보험이라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

### <참고> 경영인정기보험 개인 판매 현황

□ '24.1~7월중 **16개 생보사**(경영인정기보험 취급社)에서 **개인**에게 **판매**한 **경영인정기보험**은 전체 계약건수(3.6만건)의 **44.4%**인 **1.6만건** 수준 (\* '24.7월 판매건수는 잠정기준)

(단위: 만건, %)

법인판매건수(A)	개인판매건수(B)	합계(C=A+B)	개인판매 비중(B/C)
2.0	1.6	3.6	44.4

- □ (상품구조 왜곡 및 과당경쟁 우려)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
  - 생보사들은 무·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(예: 5년)에 유지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,
  -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 - ※ (참고) '24.1~7월중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(3.6만건)의 경우 60개월 유지 시 2.9만건에서 차익거래<sup>1)</sup>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(60개월 납입 시 납입보험금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최대 98.4%에 달함)
    1) (모집수수료 + 해약환급금 + 시책 등 환수금) > 납입보험료

## Ⅳ 향후 계획

### 1 판매과정에서의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.

- 개인(개인사업자)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·GA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사\*하고,
  - \* 생보사(GA)에서 문제점 발견 시 GA(생보사)의 관련 문제점도 즉각 확인하고 피드백
-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,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.

### 2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「보험개혁회의」 논의 등을 통해 무·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,
-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,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### ③ 소비자 유의·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하겠습니다.

-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
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·당부
  사항을 지속 전파하겠습니다.
- ※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참고
  - '24.4.17. 「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」(소비자경보 2024-17호, <u>바로가기</u>)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# 붙임 관련 법령

### □「보험업법」

### 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(후략)

#### 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2~6. (생략)

- 7.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- 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<u>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</u>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금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)
  - 2.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
  - 3.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
  - 4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
  - 5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
  - 6.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
  - 7. 「상법」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
-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
  - 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  - 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  - 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- 제136조(준용) ① 국내사무소·<u>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</u>한다. 이 경우 "보험회사"는 각각 "국내사무소"·"보험대리점" 또는 "보험중개사"로 본다.

#### 제209조(과태료) ①~⑥ (생략)
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조를 위반한 자
- 2.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
- 2의2.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
- 2의3. 삭제 <2017. 4. 18.>
- 2의4.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
- 3. 제92조를 위반한 자
- 4.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
- 5. 제95조를 위반한 자 (후략)

- **제202조(벌칙)**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1~2. (생략)
  - 3.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(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)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(收受)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(후략)

### □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

-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 - 1. (생략)
  - 2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. 다만,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 (후략)

#### 제5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<u>이 법</u>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.
- 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- 2.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- 3.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
- 4.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- 5. 기관경고
- 6. 기관주의
- 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(후략)
- 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<u>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  - 1. 해임요구
  - 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  - 3. 문책경고
  - 4. 주의적 경고
  - 5. 주의
  -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면직
  - 2. <u>6개월 이내의 정</u>직
  - 3. 감봉
  - 4. 견책
  - 5. <u>주의</u> (후략)
- **제69조(과태료)**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~7. (생략)
  - 8.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·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. 다만,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9~13. (생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~4. (생략)
- 5.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(후략)

□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

#### 제23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(생략)

-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- 1. <u>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·</u> <u>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</u> 하는 행위
  - 가. <u>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</u> 체결한 경우
  - 나. <u>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.</u> 다만,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 (후략)

#### 제4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) ①~② (생략)

-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(후략)
-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- 1.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
- 2. 수사기관에의 통보
- 3.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
- 4.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(후략)
- 제4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<u>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u> (후략)
- [별표1]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(제41조제3항 및 제42조 제1항 관련)

1~14. (생략)

15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(후략)

### □ 舊「보험업법」(☞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으로 이관)

#### 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① (생략)

- ② <u>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</u>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,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.
- 1. 보험설계사: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- 2. 보험대리점: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 사에 대한 경우 (후략)

#### 제209조(과태료) ①~⑤ (생략)

- ⑥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~6. (생략)
- 7. <u>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</u> 제95조의2·제95조의4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· <u>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</u>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11.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(후략)